#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

제정일 : 1969년 06월 21일

개정일 : 2024년 04월 30일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학칙 제11장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본교의 학생상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.

## 제2장 포상

### 제3조(포상의 구분)

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을 받을 수 있다.
1. 학업상
  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2. 공로상
  가.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<개정 2015.11.2.>
  나.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  다.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  라.교내 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3. 기타 포상
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### 제4조(포상의 절차)

① 제3조 1호의 포상은 관련부서장의 제청으로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. <개정 2023.11.1.>
② 제3조 2호, 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대학(원)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서식에 의하여 포상을 발의 할 수 있다.
1. 공적조서 1부
2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3. 학과장 의견서 1부
4. 입상증명서 1부

③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소속 대학(원)장의 포상 발의가 있을 경우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포상을 결정한다. <개정 2023.11.1.>

## 제3장 징계

### 제5조(징계의 구분)

①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.
②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1. 근신은 7일 이상 1월 미만 <개정 2015.11.2.>

2. 정학은 기간을 정한 유기정학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정학으로 구별되며, 정학의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5.04.>
3. 퇴학은 학칙 제28조 1항에 의한 제적 <호번호변경 2021.05.04.>
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봉사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봉사명령은 징계처분과 병과하지 않는다.

### 제6조(징계의 대상)

① 징계는 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료생에 대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.>
②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1.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2.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
3.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물에 관해 표절행위를 한 자
4.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
5. 학교시설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점거한 자
6. 학교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반출한 자
7. 학내 통신망, 데이터,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 사용, 무단 유출, 파괴,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한 자
8. 본교 인터넷 게시판 운영규정을 위반한 자.
9. 광고 및 인쇄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
10. 교직원에게 폭행, 폭언한 자
11. 학내에서 절도, 폭력, 폭언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
12. 기타 학칙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

### 제7조(징계위원회)

①징계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고 한다)는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(원) 전임교원 및 학생인재개발부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으로 한다. <개정 2024.04.30.>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사건에서 징계대상 학생이 2명 이상이고,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대학(원) 소속일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때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, 위원장이 속한 대학(원)이 위원회를 주관한다.

③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해 요청된 징계심의의 경우,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인권센터 소속 1인을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.

[본조 전부개정 2023.11.01.]

**제8조(징계의 발의)**

①제6조의 징계사유를 인지하여 조사한 후 조사결과가 나온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대학(원)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1.2., 2023.11.1.>
1. 사건 경위서 1부
2. 본인 진술서 1부(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)
3. 지도교수 또는 학과(부)장 의견서 1부
②학생인재개발처장은 소속대학(원)장이 전항에 의한 징계발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대학(원)장에게 징계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.>

**제9조(징계의 절차)**

① 위원회는 제8조의 징계발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.>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위원회의 결의로 최대 10일

2. 징계 심의 사유와 관련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, 그 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

3. 징계심의 대상 학생의 졸업예정학기 시작일까지 그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, 해당학기 시작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퇴학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.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학생인재개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지체없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8.4., 2023.11.1.>
④ 삭제 <2008.8.4.>

**제10조(학생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)**

①징계대상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②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본인에게 출석예정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③삭제 <2015.11.2.>

④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지도교수와 학부(과)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5.04.>

[제목개정 2021.05.04.]

**제11조(징계처분의 효력)**

①근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과 시험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.
②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.
③징계처분의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한다.
④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발의된 징계처분으로 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권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재발방지교육 또는 성인지교육 이수 의무를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04.>

⑤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1.2.>
⑥징계처분의 효력은 휴학,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징계의 해제)**

①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으로부터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소속대학(원)장에게 제출되면 소속대학(원)장은 위원회에 징계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위원회의 징계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한다. <개정 2023.11.1.>

**제13조(징계의 통보)**

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징계처분 및 징계해제 결과를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대학(원)장, 교육혁신처장, 대학원전략처장, 국제처장(징계대상 학생이 외국인일 경우), 본인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 중 하나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1.1.>

1. 우편발송

2. 전자문서

3. 기타 징계대상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

② 징계처분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시작된다. 그러나 재심요구가 있는 경우 원래의 징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 <개정 2023.11.1.>

**제14조(재심청구권)**

①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소속대학(원)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.>

② 전항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. 재심에 의하여 다시 징계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징계대상 학생에게 통보된 때에 그 효력이 시작된다. <개정 2023.11.1.>

**제15조(징계의 감면)**

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처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부칙

**부칙**

(1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결의에 따른다.
(2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6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(3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(4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5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(6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8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(7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(2008.4.28. 공포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08.8.4. 공포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15.11.2. 공포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21.05.04. 공포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23.11.01. 공포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규정) 제4조 제1항 및 제3항, 제7조 제1항, 제8조 제2항, 제9조 제3항, 제12조 제2항, 제13조 제1항에서 '학생처장'을 '학생인재개발처장'으로, 또는 '학생부처장'을 '학생인재개발부처장'으로 개정하는 부분과 제13조 제1항의 '교무처장'을 '교육혁신처장'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24.04.30.공포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별표

**(별표 1) 재심청구서(양식)(제14조)**

첨부파일 참조

첨부파일 : [별표 1] 재심청구서(양식)(제14조 관련).hwp